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증채무 최고액의 한도 설정〉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197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세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3
3. 관계기관 의견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창민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9. 23.
3. 회 부 일 : 2025.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자와 보증인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및 「신원보증법」 등은 보증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성, 호의성’에 근거하여 보증인의 의무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보증인이 되는 자가 많아 이러한 ‘무상성, 호의성’에 근거한 보증은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는 경우 보증인도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을 높여 결국 신용사회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러한 호의보증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있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도록 하며, 보증인이 최고액을 초과하여 임의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u>특정</u>)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u>특정 등</u>) ①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u>보증채무의 최고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u> ③ <u>제2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약정한 때의 최고액을 말한다.</u> ④ <u>보증계약상의 최고액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u> ⑤ <u>보증채무자가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u>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의 폐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금전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 보호법”이라 함)이 2008. 9. 22.부터 시행되고 있음¹⁾.

현행법은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이하 “호의보증”이라 함)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들을 규정하고 있는데²⁾,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³⁾, 주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금융기관의 경우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의무화⁴⁾하는 등의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9. 22.] [법률 제8918호, 2008. 3. 21., 제정] 제정이유: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에 따라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이 만연하고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함께 가정파탄 등에 이르는 등 보증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고,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며,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보증인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금전거래를 확립하려는 것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보호 장치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법(私法) 거래 현실상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무게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친분 관계나 정의(情誼)에 기인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주채무자의 도산 시 보증인까지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현행 서면 특정 및 통지 의무 중심의 특례만으로는 호의보증으로 야기될 수 있는 폐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호의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법률상 ‘2천만원 이하’로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도록 하며, 보증인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⁵⁾, 호의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고 신용사회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첫째, 사적 자치의 원칙 및 계약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우려가 있음.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로부터 사법 원리의 근간인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의 자

5) 개정안 제5항의 ‘보증채무자’ 문구는 현행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보증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등) ①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약정한 때의 최고액을 말한다.

④ 보증계약상의 최고액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⑤ 보증채무자가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가 파생됨⁶⁾.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함⁷⁾.

그러나 개정안은 당사자의 변제 자력 등 개별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호의보증 계약의 최고액을 일률적으로 제약함으로써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과거 헌법재판소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였던 구 「민법」 제651조제1항⁸⁾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⁹⁾.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최고액 2천 만원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 충분한 변제 자력과 확실한 보증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국가가 개입하여 법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6)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7)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전원재판부

8) 「민법」 제651조(임대차존속기간) ①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2016. 1. 6. 법률 제13710호로 삭제됨)

9)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 전원재판부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임차물 관리 및 개량방식의 설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임차물의 가장 적절한 관리자라는 전제하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임차물 관리 및 개량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임차물의 관리소홀 및 개량미비로 인한 가치하락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정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화된 현재의 사회경제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20년이 넘는 임대차를 원할 경우 우회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사적 자치에 의한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하고 있다. ... (중략)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취지가 불명확하고, 사회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경제 규모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한도 설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서민금융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이 제시한 ‘2천만원’이라는 상한선은 가파른 주택가격 및 생활물가 상승 등 현재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낮은 액수로서 현실적인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과거 유사 발의안 검토과정¹⁰⁾에서도 보증최고액을 2천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서민 금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일관되게 제기된 바 있으며, 화폐 가치가 더욱 하락한 현재 시점에 과거와 동일한 액수의 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실제 금융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즉, 물적 담보가 없거나 다수의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 환경의 서민 채무자는 필요한 금전을 차용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바, 상한액의 적정성 및 한도 범위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10) 제17대국회 심상정의원안(의안번호 제175019호, 2006.09.25. 발의) 및 제19대국회 박원석의원안(의안번호 제1901604호, 2012.09.06. 발의)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안건들은 각각 대안반영폐기 및 임기만료폐기되었음.

3.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당사자가 보증계약의 최고액을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른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개별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이 충분한 변제 자력을 가진 경우도 있으며, 물적 담보가 없어 인적 신뢰에 기반한 호의보증을 통해 금전을 조달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위축하여 오히려 서민 금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64